



이동찬 변호사

취업비자와 관련된 최종적 규정



오바마 정부에서 2014년 11월에 언급했던 행정조치를 실행하기위해 이민국은 2016년 11월 17일에 취업이민청원서, 비이민비자, 취업허가증(EAD)과 관련된 최종적 규정을 발표했다.

2015년 12월 31일에 제안되었던 규정이 거의 1년 만에 완결된 것이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7일 부터 시행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이민청원서가 승인된 지 180일 이상이 되었으면 스폰서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스폰서 회사가 청원서를 취하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청원서가 취소되지 않는다. 취업이민청원서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으면 이민신청자는 그 청원서의 우선날짜를 새로운 취업이민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고 H-1B 취업비자를 허용된 6년 기간 이후에 3년씩 무한정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10일 동안의 Grace Period가 E-1,

E-2, E-3, L-1, TN 취업비자 신분의 시작날짜와 만기날짜에 H-1B 취업비자처럼 적용된다. 그리고 E-1, E-2, E-3, H-1B, H-1B1, L-1, TN 신분 소유자는 해고를 당하는 경우 60일의 Grace Period를 받는다. 전에는 취업비자 소유자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으나 이제는 해고를 당할 경우 취업비자 소유자는 Grace Period 기간 동안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거나 신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셋째, E-3, H-1B, H-1B1, L-1, O-1 비자 신분을 소유한 취업이민청원서 수혜자는 EAD를 신청하는 강한 이유가 있고 영주권 발급날짜를 계속 기다려야한다면 EAD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민국은 허락한다.

예를 들어서 1) 일신상의 중한 병 또는 장애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비이민자가 거주해야하는 경우, 2) 스폰서 회사의 잘못을 고발하거나 소송함으로써 스폰서 회사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3) 취업비자신분을 연장을 못해 비이민자와 그의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4) L-1 주재원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더 이상 주재원이 될 수 없는 경우 등이 강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넷째, 최종적 규정에 의하면 대학과 관련 있는 비영리단체는 H-1B 비자 할당수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단체와 대학사이의 제휴계약서가 있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전에는 H-1B 비자 할당수에서 면제를 받기위해서 이민국 방침에 따라 대학과 비영리단체의 소유주가 같거나 같은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 증명을 할 수 없어 서류진행에 차질이 많았다.

다섯째, 현재 소유하고 있는 EAD가 만기되기 전에 동일한 카테고리의 자격으로 EAD 연장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180일 동안 취업허가가 연장된다. 그러나 90일 내에 이민국에서 EAD 신청서를 심사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진다.

여섯째, 최종적 규정은 AC 21법안에 의거하여 H-1B 신분이 만기되기 365일 전에 노동허가서가 노동부에 제출되었다면 H-1B 신분을 허가된 6년 기간 이후에도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이후에도 H-1B 신분

을 3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취업이민 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날짜부터 1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허가된 6년 기간 이후에 H-1B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일곱째, 발표된 규정은 영주권 신청서 I-485가 180일 이상 계류된 경우 같은 또는 유사한 직업으로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발표된 규정은 이민국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이민국 방침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워 더 많은 이민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규정은 미국회사들이 외국인과 고용관계를 잘 유지하고 외국인은 자유롭게 직장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민법이 더욱더 현실에 맞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도와주는 규정이므로 Trump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후 그의 반이민 정책으로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상담예약 (213) 291-9980